

**<한화 꿈에그린 증권투자신탁 1호 (주식) 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>**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4조의2	<p>제4조의2(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의 위탁)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·운용지시업무,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신탁 재산에 속한 증권·장내파생상품·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와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<u>제4조의2(해외투자자문회사)①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자를 이 투자신탁의 해외투자자문회사로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제1항의 해외투자자문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투자·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투자신탁재산의 투자·운용을 위한 운용전략수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에 권고하는 업무</u></li> <li><u>2.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투자대상의 투자·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에 권고 또는 권유하는 업무</u></li> <li><u>3. 기타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업무</u></li> </ol> <p>③제1항의 해외투자자문회사 선정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와 해외투자자문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.</p>
제4조의3	<p>제4조의3(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)①이 신탁계약 시행일 현재 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”라 한다)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포티스 하이통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(Fortis Haitong Investment Management Co., Ltd)</u></p> <p>②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및 이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거나,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해당업무를 직접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의3(해외투자자문의 책임)①해외투자자문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및 이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제1항의 해외투자자문회사를 변경하거나, 또는 자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
부 칙 (시행일)	(신 설)	이 신탁계약은 2009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.